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

2025. 06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정비 기간이 도래하였고,
- 2035 포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인구계획, 시가화예정용지 확보, 도시공간 구조, 미래상 등 지역개발여건의 변화에 부응하며,
- 구체적인 실천방안 수립 반영,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에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의 여건변화에 따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됨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호 다목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같은 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계획대상지	○ 계획면적 : 약 826.44km ²	

1.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범위 등을 결정하여야 함

〈표 1-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구 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및 구성방법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기 능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구성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구성주체	◦ 협의대상 기본개발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하는 관계행정기관(포천시청)
구성방법	◦ 당해 행정계획 관계 전문가(환경단체 포함), 협의기관 공무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 주민대표·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표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시기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개발기본계획 제안 (포천시청)	—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포천시청)	—	◦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 또는 서면심의(30일 내 의견제출)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스코핑)	법 제8, 11조 령 제4, 5, 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포천시청)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후 평가항목· 범위를 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법 제12조 령 제11조
↓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수렴 (경기도, 포천시청 등)	—	◦ 주민공람(14일) — 다른법령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수렴 ◦ 주민의견 제출(공람만료 후 7일이내)	법 제14조
↓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법 제16조 령 제21조
↓			
협의 요청 (경기도청 → 한강유역환경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법 제16조 령 제2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한강유역환경청)	—	◦ 필요시 전문기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 현지조사 의뢰	법 제17조 령 제23, 24조
↓			
협의내용 통보 (한강유역환경청 → 경기도청)	—	◦ 협의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통보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법 제18조 령 제25조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2021. 03. 25. :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61호)
- 2024. 06.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5. 04.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위원 구성 및 심의(서면)
- 2025. 06.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5. 06.~0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
- 2026.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1.4 계획의 내용

가. 계 획 명 :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나. 계획범위

- 공간적 범위 : 경기도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약 826.44km²)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다. 계획시행자 : 포천시

라. 승인기관 : 경기도

마.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바. 계획내용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도지역) 변경

-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
-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금회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총괄표로 제시하였음
- 세부적인 계획은 미확정으로 변경조서(변경사유 및 면적 등)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시 제시할 계획임
- 환경적으로 민감한 용도지역 하향조정 및 해제에 대한 변경내용 및 사유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표 1-3〉 용도지역 변경(도시지역) 총괄(안)

구 분		용도지역(입안)		블록 개소수	면적(㎡)
		기정	변경(안)		
계				13	248,242.4
유형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	3	17,574.4
유형②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시가화지역 내부에 섬처럼 남은 지역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	1	5,686.8
		제1종일반주거	자연녹지	1	703.4
유형③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 용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생산녹지	자연녹지	2	153,002.5
		자연녹지	제1종일반주거	1	1,254.7
		자연녹지	제2종일반주거	2	3,029.7
		자연녹지	준주거	3	66,990.9

〈표 1-4〉 용도지역 변경(도시지역 외) 총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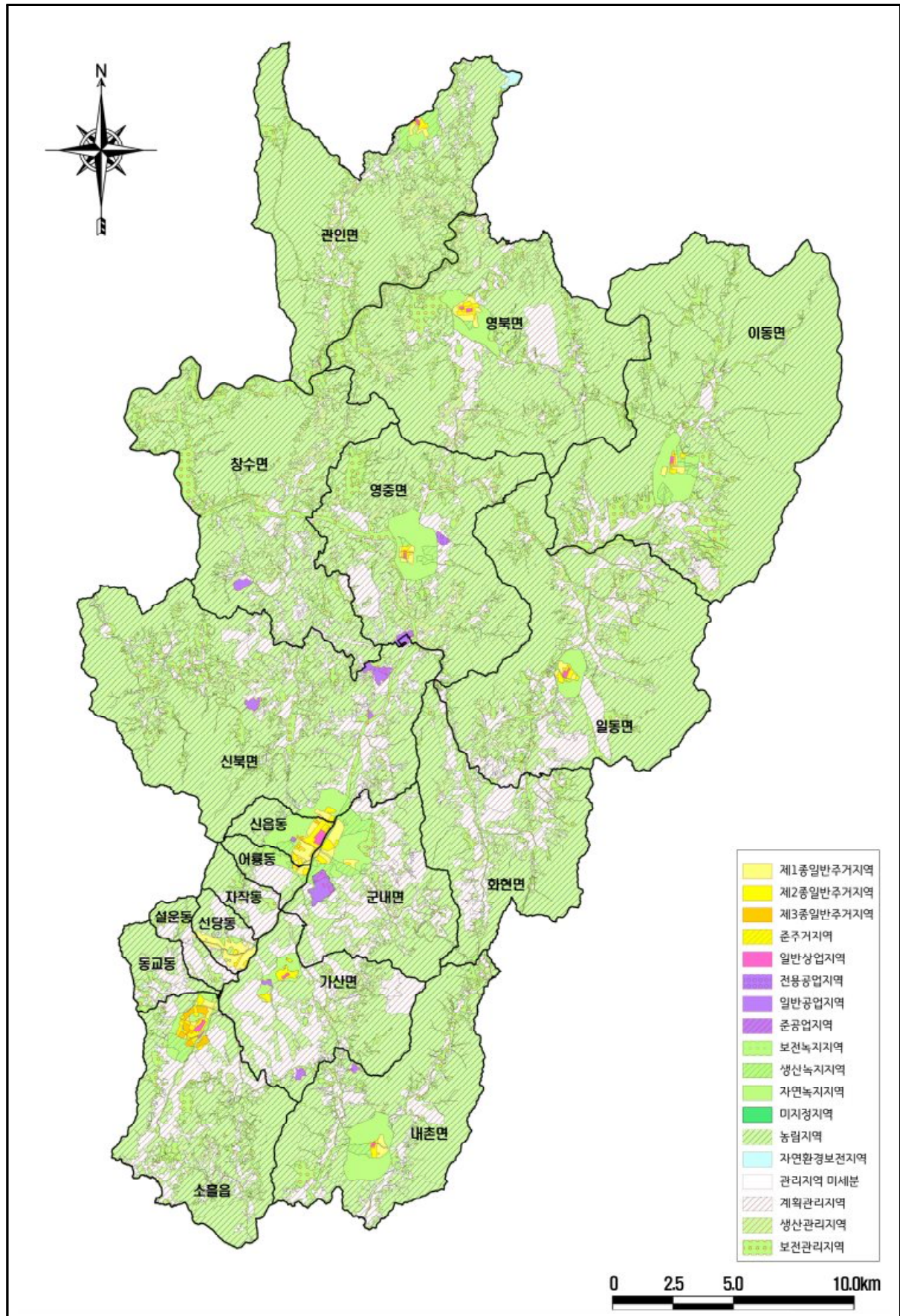
구 분		용도지역(입안)		블록 개소수	면적(㎡)	
		기정	변경(안)			
계				283	1,599,710	
유형①	기결정시 누락지역		－	－	－	
유형②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농림지역	보전관리	1	5,899
			보전관리	계획관리	1	4,980
			보전관리	생산관리	2	28,164
유형③	소규모 블록 연접 용도지역에 따른 조정		보전관리	계획관리	1	3,006
유형④	개발완료지(세분 후) 용도지역 현실화		보전관리	계획관리	11	80,484
			보전관리	생산관리	1	14,321
			생산관리	계획관리	8	60,845
유형⑤	준공된 건축물 필지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보전관리	계획관리	2	3,194
유형⑥	1	농림지역 → 주변 용도지역 (3천㎡ 미만)	농림지역	보전관리	67	24,361
			농림지역	생산관리	31	13,801
			농림지역	계획관리	68	30,946
	2	농림지역 →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3천㎡ 이상)	농림지역	보전관리	23	419,654
			농림지역	생산관리	18	175,395
			농림지역	계획관리	43	557,884
기타	용도지역 미부여필지 정비		미세분	계획관리	4	171,877
			계획관리	보전관리	1	1,346
			－	보전관리	1	3,553

〈표 1-5〉 도시지역 용도지역 정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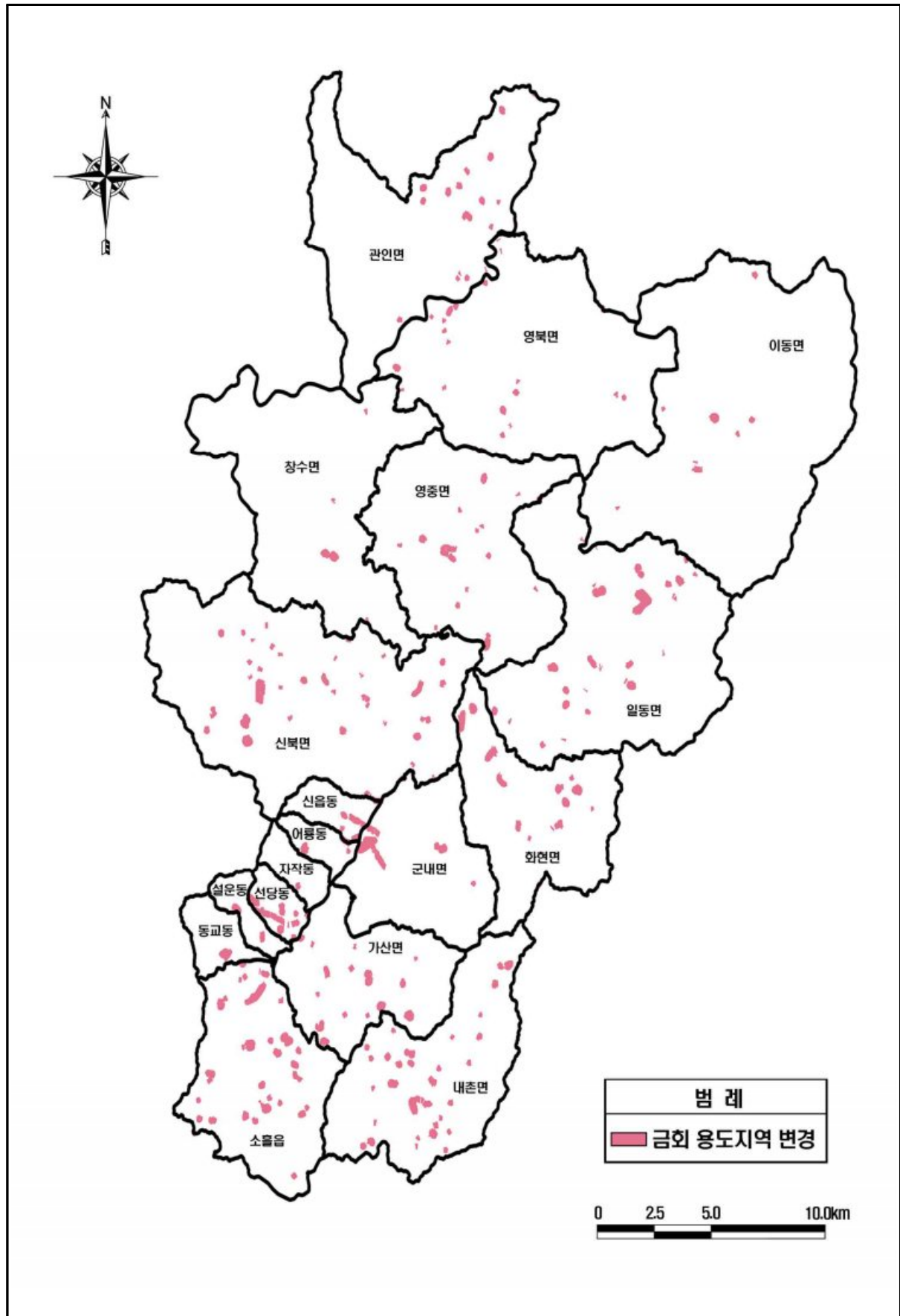
구분	정비기준
유형 ①	•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도시지역 내 하천 : 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또는 해제되어 용도지역 정비가 필요한 경우
유형 ②	• 현황여건상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선형으로 남게 되는 지역 - 시가화지역 내부에 섬처럼 남는 지역
유형 ③	• 기타 용도지역 현실화 -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표 1-6〉 경기도 비도시지역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

구분	계획유형	검토기준
관리 지역 내 변경	[유형①] 기결정시 누락지역 (최초 세분 전 기개발지 : 보전·생산관리 → 계획관리)	• 최초세분 시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직접 연접한 최초세분일 이전 기개발지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 잔여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등 용도지역 정형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될 경우 최초세분일 이전 기개발지 면적비율 2/3 이상 적용
	[유형 ②] 토지이용현황에 따른 용도지역 조정 (보전관리 → 생산관리)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여 토지이용현황 상 농지 면적비율 2/3 이상 ※ 생산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유형 ③] 소규모 블록 연접용도 지역에 따른 조정	• 다른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선형으로 남게 되는 지역(3,000㎡ 미만)
	[유형 ④] 기개발지(세분 후) 용도지역 현실화 (보전·생산관리 → 계획관리)	• 입안블록이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면적비율 2/3 이상 ※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유형 ⑤] 준공된 건축물 필지 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	• 준공된 건축물 필지의 현 용도지역과 토지이용현황, 인허가 사항 등을 고려
농림 지역 ↓ 관리 지역	[유형 ⑥]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해제지역	• 3천㎡ 미만 -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접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접할 경우 보전용도로의 변경을 우선 검토
		• 3천㎡ 이상 －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당 블록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고 용도지역 내 불부합 용도 면적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조정 검토(계획관리지역과 연접하지 않은 경우 1만㎡ 이상 적용) ※ 1만㎡ 미만 블록이라도 연접 용도지역으로 조정 검토 필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3천㎡ 미만” 기준 적용 검토 가능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개설로 편입된 경우”에 해당되어 해제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검토 가능
		•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 미만 － 용도지역 변경 시 용도지역의 정형성 훼손이 우려되는 블록에 대해 농림지역으로 존치 검토 ※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 이상의 블록에 대해서는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조정기준상 “3천㎡ 이상”에 대한 검토기준 적용
		※ 위 기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달리 적용할 수 있음



(그림 1-1)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그림 1-2) 용도지역 변경지역 위치도

제2장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2.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기준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제7조의2에 따라 주요 검토항목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음
 - －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법률(행정규칙 포함) 등에서 설정된 기준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목표치, 각종 환경보전계획 등에서 제시된 목표 및 지표 등
 - － 정량적인 목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 목표 설정
 - － 정성적 목표 설정의 필요성이 적거나 없는 사업 또는 항목은 환경보전목표 설정 생략

〈표 2-1〉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구 분	환경보전목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대기·수질환경·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외에서 적용·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 상황

2.2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과 환경관련기준 등을 고려하여 본 계획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024.01), 환경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환경보전목표 설정은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음

〈표 2-2〉 환경보전목표 설정

평가항목		환경보전 목표	사 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및 일관성 부합성 등 적용 유지	○ 상위 및 관련 계획에서 제시된 환경보전계획 및 목표 등의 연계성 및 일관성 부합성 등 검토 필요
대안설정 분석의 적정성		○ 계획의 목적 또는 목표, 성격, 내용, 지역적·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설정	○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별 비교·검토
2)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자연환경훼손 최소화 - 동·식물상 서식지 및 산림식생 훼손 최소화 - 법정보호종 서식지 포함 확인 시 보호대책 수립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상 영향 검토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법정 보호종 서식지 파악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보전 및 지형변화 최소화	○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의 훼손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자연경관 변화 최소화	○ 인공구조물 등에 의한 경관변화 최소화
	수환경의 보전	○ 수질(환경기준) 목표기준 유지달성 ○ 오염총량 오염부하할당량 준수	○ 수질오염총량 단위유역(한탄A, 한탄B, 신천A, 영평A, 왕숙A) 해당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대기질(환경기준), 소음·진동(환경기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등 목표기준 준수 및 배출원 관리	○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 ○ 필요시 보상기준 등을 위한 환경질 목표기준 설정 필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발생폐기물의 적정 처리방안 제시	○ 계획 수립에 따른 공사시 각종 폐기물 발생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수립 ○ 상위계획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계획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관련 환경기준 준수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환경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평가대상지역)을 평가항목별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하여 다음 표와 같이 설정하였음

〈표 3-1〉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구 분			대상지역의 설정기준	대상지역의 범위
자 연 환 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 산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 및 자연 생태계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지형 및 생태축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시 절성토 및 구조물설치에 따른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도시관리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 전	수 질 (수라수문)	○ 계획시행시 토사유출 및 작업인부의 오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수계 ○ 수질오염총량 관련 검토 ○ 비점오염물질 발생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생 활 환 경 의 안 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기상현황 파악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대 기 질	○ 계획시행시 비산먼지 및 오염물질 발생의 영향이 예상되는 영향예상 시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 계획시행시 투입장비 등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시 발생 오수, 폐기물 등의 연계처리 가능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의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지역

제4장 대안의 설정

4.1 대안의 종류

4.1.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49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안을 검토함
- 대안선정은 행정계획의 수립, 시행에 따른 여러 비교·대안 중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시기·순서], [기타]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를 실시 후 최적안을 선정하였으며, [입지] 대안은 본 계획의 특성상 대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대안으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미선정 사유를 제시하였음

〈표 4-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설정방법	비 고
계획비교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선정
입지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미선정
수단·방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선정
수요·공급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선정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

〈표 4-2〉 대안 미선정 사유

대안종류	대안 미선정 사유	비 고
입 지	○ 본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수립으로 별도의 개발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므로 대안선정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음	

4.2 대안의 설정

4.2.1 계획비교

- 행정계획 수립(Action) 및 행정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계획비교에 따른 대안별 비교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3〉 계획비교에 의한 대안 검토

구분	대안	
	1안(Action)	2안(No action)
대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미수립
토지이용측면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토관리 가능 ○ 상위계획과 연계된 도시지표 및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능	○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 비계획적인 난개발 가능성 내포
도시계획측면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가능	○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불가 ○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소 등 도시의 탄력성 있는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음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 현재상태 유지 가능 ○ 본 행정계획 특성상 계획수립에 따른 현재상태의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 없음	○ 현재상태 유지로 계획에 따른 각종 보호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생태계 훼손 가능성	○ 주변 생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계획 수립으로 생태계 훼손 가능성 적음 ○ 본 행정계획 특성상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현재상태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없음	○ 현재상태 유지로 계획에 따른 생태계 훼손이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본 행정계획 특성상 실질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행위는 없어 현재 상태의 지형훼손은 없음	○ 현재상태 유지로 계획에 따른 지형 훼손이 없음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미치는 영향	○ 추후 개별 계획대상지 개발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은 예상되나, 현재 단계에서의 계획 수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상 오염가중은 없음	○ 현재상태의 생활환경 유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본 행정계획 특성상 실질적인 토지이용 계획 및 개발행위는 없어 현재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없음	○ 현재상태의 자연경관 유지
환경기준의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	○ 본 행정계획 특성상 환경기준 유지 및 달성에 미치는 영향없음 ○ 장래 여건 변화시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환경기준에 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토록 할 계획임	○ 현재상태로 환경기준 유지에 미치는 영향없음
채택안	◎	
채택사유	○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 및 오염가중은 없어 현재상태의 환경기준 유지 가능 ○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시급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여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 포천시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가능	

4.2.2 수단·방법

-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을 일괄 수립하는 대안과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발생시 수립에 대한 수단·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표 4-4〉 수단·방법에 의한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내 용	○ 도시관리계획 일괄 수립	○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발생시 수립
장 점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일괄 계획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 ○ 주변 현황과 개발계획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한 일괄적 계획 수립	○ 개발수요를 즉각적으로 반영한 직접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단 점	○ 개발여건 등의 변화 시 탄력적인 대응 미흡	○ 개별 계획수립으로 인한 난개발 예상 ○ 지역별 불균형적인 발전 및 주민 갈등 우려 및 지속적인 민원발생 가능성
채택안	◎	
채택사유	○ 도시 여건변화를 반영, 관련 계획상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2035년 포천 도시 기본계획의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포천시의 체계적이고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1을 채택함	

4.2.3 시기·순서

-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과 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표 4-5〉 시기·순서에 의한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내 용	○ 도시계획(재정비) 수립 후 단계별로 사업시행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후 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사업시행
장 점	○ 단계별 사업시행시 2안 대비 소규모 공사가 이루어져 주변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적음	○ 포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에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됨
단 점	○ 단계별 사업시행으로 사업 기간이 2안 대비 과다 소요	○ 포천시 전체에 사업이 일시에 시행될 시 주변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1안과 비교시 큼
채택안	◎	
채택사유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고, 상위계획에 부합하며, 주변 자연·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대안1을 채택함	

4.2.4 수요·공급

○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조정 후 주거지역 공급을 확대하는 대안을 유형별로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표 4-6〉 수요·공급에 의한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내 용	○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미반영]	○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반영]
유형① [자연녹지 ↓ 주거지역]		
유형③ [자연녹지 ↓ 주거지역]		
유형③ [자연녹지, 생산녹지 ↓ 주거지역]		
채택안		◎
채택사유	○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및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후 주거지역 공급을 확대하는 대안2를 채택함	

주) 1. 상기 제시된 대안은 상세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도시지역) 유형 구분은 <표 1-3> 참조

4.2.5 기타

-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민원에 대해 기타 대안으로 비교·검토하여 선정함

〈표 4-7〉 기타 대안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내 용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 [미반영]	○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 [반영]
유형① [자연녹지 ↓ 자연녹지]		
유형③ [자연녹지 ↓ 자연녹지]		
유형③ [자연녹지 ↓ 자연녹지]		
채택안	◎	
채택사유	○ 대상지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주거지역에 연접하지 않는 등 주거지역 변경 근거 부족 등으로 토지이용현황 상 현재 용도지역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태인 대안1을 채택함	

- 주) 1. 상기 제시된 대안은 상세 계획 수립 시 변경될 수 있음
2. 용도지역(도시지역) 유형 구분은 〈표 1-3〉 참조

제5장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5.1 평가항목의 설정

5.1.1 평가항목의 선정

-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특성 파악 및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1개 항목을 환경현황 조사항목으로 나머지 10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표 5-1〉 중점평가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1.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의 일관성 및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필요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 및 입지대안의 적정성 검토 필요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 산	○ 계획시행으로 인한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의 서식지 및 다양성, 자연환경자산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계획시행에 따라 지형변화 예상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 관	○ 계획시행에 따라 경관변화 예상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수리·수문)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 수계 및 우·오수처리 시설에 직·간접적인 영향 예상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 상	○ 계획대상지와 가장 인접한 기상대자료를 이용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 등에 기초자료로 이용
			대 기 질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의한 영향 예상
			소음·진동	○ 계획시행에 따라 주변지역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영향 예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연계 및 적정성 검토 필요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시행에 따라 생활, 건설, 지정폐기물 발생 예상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예상

〈표 5-2〉 일반검토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현황조사 항목(1개)	기 상	○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현황 조사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표 5-3〉 제외 항목 선정

구 분	평가항목	선정 사유
제외 항목 (10개)	온 실 가 스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평가항목 대체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토 양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토양 영향 없음
	인 구 · 주 거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영향 미약
	악 취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악취발생 요인 없음
	해 양 환 경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의 특성상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없음
	전 파 장 해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전파장해 요인 없음
	일 조 장 해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일조영향 없음
	위 생 · 공 중 보 건	○ 위생 · 공중보건상 문제는 미약
	위 락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영향 미약
	산 업	○ 도시관리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영향 미약

5.2 평가범위 및 방법의 설정

5.2.1 조사 · 예측의 방법

- 본 계획의 평가항목별 조사, 예측방법은 다음 표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문헌자료 및 측정망자료)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지역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계획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 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계획임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표 5-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내용	영향예측 방법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①조사내용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상위계획과 일관성, 다른 행정 계획과의 연계성 반영여부 검토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기본계획보고서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계획수립 과정을 통한 대안설정·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생물 다양성 · 서식지보전	동· 식물상	①조사내용 : 식물상 및 식생, 육상동물상 현황, 육수동물상 현황, 생태 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에 대한 영향검토 ○ 분류군별 서식처훼손 및 간섭에 따른 영향검토
	자연 환경 자산	①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현황,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보호구역 등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자연환경자산 및 역사적·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에 대한 훼손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 · 지질	①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등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검토 ○ 산림·생태·녹지축 검토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①조사내용 : 경관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계획대상지 지역경관 특성 검토 ○ 경관심의대상 여부 검토
수 환경의 보전	수질	①조사내용 : 수환경 보호지역(상수원보호 구역, 취·정수장 등) 현황, 수계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수계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자동측정망 등)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수계의 환경기준 부합성(기준 초과 여부) 검토
생활 환경의 안전성	기상	①조사내용 : 계획대상지 인근 기상대의 최근 기상자료 분석·정리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 기상관측자료 조사	○ 기상연보 분석·정리
	대기질	①조사내용 : 대기질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자동측정망 등)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대기환경기준 부합성(기준 초과 여부) 검토
	소음 · 진동	①조사내용 : 소음·진동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환경 기준 부합성 (기준 초과 여부) 검토
	환경 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연계의 적정성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 이용	①조사내용 : 토지이용 현황 ②조사범위 : 계획대상지 ③조사방법 : 문헌조사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 주변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검토

5.2.2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 평가항목마다 본 계획시 환경영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회피 또는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표 5-5〉 전략환경영향평가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구분 항목		예측·분석기법 및 내용	관련자료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과 일관성,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 반영여부 검토	○ 상위 및 관련계획 문헌자료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수립 과정을 통한 대안설정·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안별 비교·검토 자료
생물 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 조사 ○ 동·식물상(육상, 육수) 조사 ○ 생태계 분포특성 조사	○ 문헌자료
	자연환경 자산	○ 학술적,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 환경자산 조사	○ 문헌자료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검토 ○ 산림·생태·녹지축 검토	○ 지형도 및 지질도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	경관	○ 계획대상지 지역경관 특성 검토 ○ 경관심의대상 여부 검토	○ 문헌자료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라수문)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수계의 환경기준 부합성(기준 초과 여부) 검토	○ 측정망 및 문헌자료
생활 환경의 안정성	기상	○ 기상연보 분석·정리	○ 최근 기상연보, 기상청
	대기질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대기환경기준 부합성(기준 초과 여부) 검토	○ 측정망 및 문헌자료
	소음 · 진동	○ 측정망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계획대상지 주변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성 (기준 초과 여부)검토	○ 문헌자료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계획시행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연계의 적정성 검토	○ 문헌자료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생활·건설폐기물 및 분뇨발생량 검토	○ 전국 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 통계연보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시행 전·후 토지이용 변화 검토	○ 통계연보 및 사업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열람(토지이음)

제6장 기후변화영향평가

6.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됨

〈표 6-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3조(기후영향평가)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하여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한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검토에 대한 협의를 같이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표 6-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계획 및 개발사업

구 분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도시의 개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고, 가목1) 중 고속국도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본 계획적용	대상면적 : 약 826.44km ²

6.2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6.2.1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선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공고 제2023-175호, 2023.07.25., 환경부」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과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으로 구성

〈표 6-3〉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관련) [별표 5] 비교

1. 영 별표 2의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라목 및 바목의 대상계획은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은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에서 규정한 대상계획 외 영 별표 2에서 정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계획은 위 표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상 계획의 특성과 제13조에 따른 협의회 심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표 제2호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또는 제3호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포함해 **간략히** 작성할 수 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은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참조하여 선정하였음

〈표 6-4〉 평가항목의 선정결과 및 사유

평가항목		선정결과	사유	비고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간략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간략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전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선정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간략	○ 기후위기 적응 관련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선정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간략	○ 계획시행으로 인한 기후위기 적응요인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선정	

6.2.2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 본 계획의 특성, 입지여건, 법적 규제지역, 지역 특성 및 환경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간접적인 영향권과 장·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였음

〈표 6-5〉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항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비고
		시간	공간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수립 시점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정책, 계획 대상지가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 연계성 검토	
	온실가스 감축 전략의 적정성	가까운 미래 (10~20년), 먼 미래 (탄소중립목표지점 (2050년) 또는 30년 이상)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예상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 국가 및 지자체의 감축목표 등을 반영하여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탄소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전략 수립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계획수립 시점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후위기 적응 관련 국제협약 및 국제동향, 국가정책, 계획 하천이 위치하는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정합성, 연계성 검토	
	기후위기 적응 전략의 적정성	가까운 미래 (10~20년), 먼 미래 (탄소중립목표지점 (2050년) 또는 30년 이상)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기후위기 적응요인(폭염, 가뭄, 폭우/홍수 등)을 확인하여 예상되는 영향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 ○ 취약성과 위험성을 바탕으로 도출된 리스크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적응전략 및 방안 수립	

제7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7.1 주민의견 수렴계획

7.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포천시”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14일 이상 공개 및 의견수렴

7.1.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고

- 본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 포천시의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을 이용하여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고 실시

7.1.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인 포천시의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요약서를 공개하여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공람장소는 “포천시청”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대상지가 위치한 “포천시 관할 읍·면사무소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요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포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임

7.1.4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8.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4조 및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8.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 위원장 : 포천시청 도시정책과장
 - － 위원구성 : 위원장 포함 10명
- 위원임기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 심의 완료 시까지
- 심의방법 : 서면심의

구 분		소 속	성 명	비 고
1	위원장	포천시청 도시정책과	임 ○ ○	계획수립기관 소속 공무원
2	위 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 ○ ○	협의기관 소속 공무원
3	위 원	경기도청 기후환경정책과	김 ○ ○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4	위 원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	유 ○ ○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5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이 ○ ○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6	위 원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	홍 ○ ○	협의기관 추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7	위 원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본부	김 ○ ○	협의기관 추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8	위 원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최 ○ ○	관할 지자체 소속 공무원
9	위 원	포천시 이통장연합회	유 ○ ○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10	위 원	(주)세광종합기술단	남 ○ ○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8.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총괄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및 시·군 환경계획 등 환경보전계획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시책 등 기후위기대응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의 별표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이행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공사한 블록(비고 연결포함*)의 경우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여야 함
- 자연생태계, 경관 등이 우수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과 주변 보전지역으로의 개발 확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큰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지양하고, 충분한 완충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2등급, 식생보전도 3등급이상 및 경사 20도 이상 중첩지, 국토환경성평가도 1,2 등급과 별도 개별법에 따라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별도의견 없음

3. 대안

- 별도의견 없음

4. 평가항목 및 범위 · 방법 등

- 보전이 필요한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Ⅲ등급 이상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영향권, 철새도래지, 수변구역, 생태축(녹지·하천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역, 보호 가치가 필요한 지형·지질 등)의 해당여부, 이격거리 등을 제시·검토하여야 함
-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정보를 표로 정리 · 제시하여야 하며 검토 용이성을 위해 용도지역, 용도 지구별로 정보를 집약하여 제시
- 변경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주변 지역의 환경현황, 개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큰 축적의 위성지도를 제시하여야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계획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계획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6. 기타

- 동 심의결과를 반영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025. 5. .

심의위원: 이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2020 포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정비 기간이 도래하여 법정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 방향 설정을 하여야 하며, 녹지축 및 자연 농림지역 연계성 유지 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부존재하여 정량적인 기준이 설정에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정성적인 목표 설정보다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여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이용 합리화 및 그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고, 사업부지 내 식생이 양호한 지역은 완충녹지(원형보전)로 계획하는 등 부지 특성을 살리는 계획을 구상

4. 대안

- 본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 사항 및 근거자료 등을 수록 바람
 - 주변에 계획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사업 시기가 중복되는 경우, 누적하여 영향 예측을 실시 바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수렴 시 대상 지역 주민들이 공람,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함

2025. 5.

심의위원 김 (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을 진단하기 위한 세부 목표(또는 지표),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나열됨.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별도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비도시지역(관리지역 제외) 내 포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일어난 지역”을 추가할 것을 권장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상기 내용과 동일함

4. 대안

- 대안의 종류 및 선정에서 ‘수요·공급’과 ‘기타’에 대한 미선정 보다는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이해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표6-5>와 <표6-6> 토지이용 항목에 대한 조사·예측과 관련자료에 대한 구체적 항목을 기술할 것을 제안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의견 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됨

025. 05. 07.

심의위원 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서면심의 의견서

- 203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 총괄 의견

-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 및 환경부하 증가의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서, 양호 산림 및 경작지, 수변역 등 환경 민감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과도한 변경은 지양하고 기 개발지 정비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블록별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 개발지 정비 중심의 용도지역 변경

-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내 난개발의 우려가 큰 용도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 지역이 기개발되어 있거나 상위계획상 개발계획이 기수립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 개발된 구역 경계를 벗어나 주변의 양호한 산림지 및 경작지를 포함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될 시 인접한 보전적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연결성 또는 정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접 용도지역에 맞추어 관리지역 결정 시, 보전적 용도지역으로 둘러싸이거나 연접한 경우, 기 개발되거나 개발압력이 큰 구간 외에는 보전적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결정·변경 사유 및 계획부지에 관한 현황 자료(도면)를 추가 제시하여야 함
 - 특히 용도지역 상향지역(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면적이 50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블록별 자료 작성
 - 현황 자료(도면): 계획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 (1) 지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 (2)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 (3) 생태·자연도
 - (4) 식생보전등급도(II, III, IV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
 - (5) 경사도면(경사도 20° 이상 지역만 표시)
 - (6) 표고도
 - (7) 국토환경성평가도
 - (8) 토지적성평가도
-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항도(등고선 제외),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 하천의 구분(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하천/호소 수질등급, 계획홍수위선, 물 흐름 방향, 소 유역 내 유선, 저수지(이용현황 및 규모 등) 등을 개략적인 이격 거리와 함께 표시
 - 계획지구와 하천/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
 -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
- 또한 계획부지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주능선(생태)축 및 소능선(생태)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 도면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2025. 5. .

심의위원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계획지구와 인접한 행정구역의 기후변화 추이(기온, 강수량 등)를 분석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한 피해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저감 방안 수립 필요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 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 없음

4. 대안

- 의견 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폭우·폭염,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현황(하천범람지도, 생활 안전지도 등)과 미래 기상변화 예측 등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고, 국가·지자체가 수립한 기후 위기 적응 관련 계획 및 정책과의 리스크 도출, 연계성 등 관련 내용 검토가 필요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등 추진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5. 5. 2.

심의위원 홍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본 건은 경기도 포천시 전역 (약 826.44km²)에 대하여 2030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변경하고자 하는 현안 대상에 대한 사유와 해당 부지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의견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결지역의 용도지역으로 조정 계획 시 해당 필지의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안
 -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과도한 용도 상향의 변경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각 계획부지별로 구체적인 결정·변경 사유 및 계획부지에 관한 현황 자료(도면)를 추가 제시하여야 함
 - 현황 자료(도면):
 - 계획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 (1) 지정 및 변경용도가 표시된 도면
 - (2) 해상도 높은 항공사진 또는 위성사진
 - (3) 생태·자연도
 - (4) 식생보전등급도(II, III, IV등급 이상 지역만 표시)

(5) 경사도면(경사도 20° 이상 지역만 표시)

(6) 표고도

(7) 국토환경성평가도

- 하천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수계 현황도를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 수계 현황도에는 하천개황도(등고선 제외), 상수원보호구역과 취수장, 하천의 구분(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하천/호소 수질등급, 계획홍수위선, 물 흐름 방향, 소 유역 내 유선, 저수지(이용현황 및 규모 등) 등을 개략적인 이격거리와 함께 표시
 - 계획지구와 하천/호소와의 거리는 명확히 표시
 - 계획지구 하류의 침수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계획지구의 오수처리 및 용수공급 현황을 파악
- 또한 계획부지를 포함한 도시의 전체 자연환경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주농선(생태)축 및 소농선(생태)축이 표시된 도시 개황도면(각 계획부지 경계 및 번호 표시) 도면
- 본 계획의 변경 내용 중 녹지 감소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의 연계성 및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 산사태 위험지구, 하천 인근 등에 위치하는 변경 사항의 경우 필요시 기후변화 리스크를 파악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2025. 5.

심의위원 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포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야 하며,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조사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연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입지나 규모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주변 정온시설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금회 계획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구역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3. 토지이용 구상안

- 금회 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친 환경적인 토지이용구상안을 마련하여야 함.

4. 대안

- 의견없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평가준비서 제4장 지역개발 기재 오류 및 누락 사항

- 4.3. 환경관련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16p)

→ <표 4-4> 환경관련 지구·지역·구역 등 지정현황① 수정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은 모두 '청정', 배출시설(폐수) 설치제한 지역은 '포천시 전역' 으로 수정)

- 4.4.3.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21p)

→ 포천시는 전역이 '청정'지역 기준으로 적용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비고 3에 따라 청정지역 기준으로 적용)

- 4.4.4. 배출시설(폐수) 설치제한 지역(22p)

→ 평가준비서에 기재한 내촌면, 소흘읍(무림리, 이곡리, 직동리)에 더불어 우리 시의 나머지 지역이 '임진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18-6호)'에 따라 배출시설(폐수) 설치제한 지역으로 지정됨.

- 4.6.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25p)

→ 대기, 폐수배출시설 1, 2종은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 배출시설 현황 자료받아 반영 필요

2025. 4. 18.

심의위원 : 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 관 의 건

- 본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변경) 시 주변지역 현황 및 지역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통해 변경되는 사항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하고,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환경보전목표 설정시 각 항목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에 대한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 구상에 대한 의견없음
4. 대안
 - 금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대안설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은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 발생시 평가 항목, 범위, 방법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관련 추가적인 의견없음

2025. 04.

심의위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은 포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행정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과의 연계를 통한 변경의 필요성, 환경영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본 계획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각 평가분야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적절히 제시하였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포천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대상지역의 설정에 대한 의견없음

3. 토지이용 구상안

- 현재 세부적인 계획은 미확정이고 계획의 특성상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구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본 계획 수립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역주민, 지역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그 사유를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4. 대안

- 2030년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대안은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로 3개의 대안을 선정하였으며, 본 계획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설정하여 비교·검토하였음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항목, 평가범위 및 방법은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평가준비서에 제시한 대로 평가 항목·범위·방법을 시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현황 조사방법으로 측정망 및 문헌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음.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전제로 한 계획이 아니며,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문헌조사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헌조사시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계획대상지 인근지역 환경영향평가서, 공공데이터 등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함

6.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을 계획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

7.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기타 의견없음

2025. 04.

심의위원 남